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60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박덕흠 · 성일종 · 안철수

서천호 • 김성원 • 김소희

장동혁 • 윤영석 • 박상웅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을 "20년"으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제36조(벌칙) 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	<u>5년</u>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u>65억원</u>
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②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u>20</u>
는 <u>1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5</u>	<u>년</u> <u>30억원</u>
<u>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